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6월 22일

미래·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1년 5월 27일

나. 제출자: 강서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1년 6월 2일

라. 상정일자: 제28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상정·의결(2021.6.15.)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송삼선 가족정책과장)

가. 제안이유

상위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법령 제정 취지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조례의 제명을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여성폭력방지과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함
- 2)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3)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 4)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에 대하여 규정(안 제4조)
- 5) 시행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안 제5조)
- 6)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1조)
- 7) 여성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2조)
- 8)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3조)
- 9) 관련 정보의 제공 및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4조~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해당부서: 가족정책과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1. 4. 16. ~ 5. 6.) 결과: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 4)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4.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서선옥)

- 본 조례안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2019년 12월 25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폭력방지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 조례의 제명을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여성폭력방지과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 안 제1조 목적에서 근거법령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으로 개정함
 - 안 제2조 용어의 정의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참고자료

여성폭력방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2. “여성폭력 피해자”란 여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 가.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 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 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서 여성폭력방지와 여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지원을 위하여 행정적 조치 및 재원을 조달하도록 하였고.
- 안 제4조에서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음
- 안 제5조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으로
 -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 여성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6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여성보호를 위한 지역안전망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여성폭력방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과 운영,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 종전의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를 폐지하고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신설하였음

※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와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구성 비교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인원	20명 이내	10명 이내
위원장	구청장 (다만,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부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1인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음)	생활복지국장
당연직 위원	아동·여성폭력 관련 업무담당 국장	없음
위촉직 위원	다음 각 호의 기관·시설·단체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1)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 2) 여성폭력 관련기관 또는 시설 3) 아동보호 관련기관 또는 시설 4)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5)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6)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관련 기관 7)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	1. 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1)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2)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와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3)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 4)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기관 5) 그 밖에 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 <u>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단,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경우는 제외</u>

- 안 제12조에서는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13조에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14조에서는 관련정보의 제공, 안 15조에서는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등 새로운 유형의 여성폭력 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이에 정부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시행 의무(법 제4조),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의무(법 제18조), 여성폭력 예방교육 실시(법 제19조) 등을 규정하였음

○ 본 전부개정안은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제정된 현행 조례의 적용대상을 아동을 제외한 여성으로 하고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맞춰 전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우리구의 여성폭력 방지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또한 기존 조례의 전부 개정에 따라 내용에서 제외된 아동의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할 별도의 조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아동·청소년 전담부서가 신설되는 만큼 아동·청소년에 대한 폭력 및 학대 방지와 보호업무도 빈틈없이 준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전담부서 신설에 따른 아동 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준비중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심의 사항을 추가하고, 위원회의 성격에 맞게 위원의 구성 및 운영부분을 일부 수정함

나. 수정내용

-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심의사항에서 긴급쉼터(여성폭력피해자 생활지원과 보호시설)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는 것에서 생활복지국장으로 수정함
-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여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 정기회의를 연1회 이상에서 연2회 개최하도록 수정함

붙임 1) 수정안 및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2) 관계법령 1부.

< 수정안 >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여성폭력방지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긴급쉼터(여성폭력피해자 생활지원과 보호시설)에 관한 사항

제7조제1항 중 “생활복지국장”을 “부구청장”으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생활복지국장이 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여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 중 “1회 이상”을 “2회”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p>제6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생략)</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 5. (생략)</p> <p><u><신설></u></p> <p>6. (생략)</p> <p>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u>생활복지국장이</u> 되고, 부위원장은 <u>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p> <p>②·③ (생략)</p> <p><u><신설></u></p> <p>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생략)</p> <p>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p>	<p>제6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5. (현행과 같음)</p> <p><u>6. 긴급쉼터(여성폭력피해자 생활지원과 보호시설)에 관한 사항</u></p> <p><u>7. (현행 제6호와 같음)</u></p> <p>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 ----- ----- - <u>부구청장</u>----- -- <u>생활복지국장이 된다..</u></p> <p>②·③ (현행과 같음)</p> <p><u>④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여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u></p> <p>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 ⑤ (생략)

----- 2회

-----.

③ ~ ⑤ (현행과 같음)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6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효율적인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7조(피해자 정보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2차 피해 방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의 장은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2차 피해 방지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범위와 2차 피해 방지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여성폭력 예방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③ 교육부장관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여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제20조(홍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홍보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운영하여야 하며 이는 성폭력 추방 주간, 가정폭력 추방 주간, 성매매 추방 주간과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방지,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의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3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